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1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6. 8. 10.

다. 회 부 일: 2026. 8.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문화 수준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감독할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0조).

Ⅲ. 검토의견

□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산업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현행법¹⁾은 정부가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

1)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광사업을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으로 보고, 정부의 역할을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규제의 측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에 기반한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광사업의 지도·육성에 관한 정부의 시책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관광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중심에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관광 분야 개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산업 전문인력 육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 관광산업 진흥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 및 관광 분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관련 조문]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사업

구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4,113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 관련 협·단체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구인·구 직 지원, 관광학 학술연구 활성화, 관광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등
'25년	13,335		
'26년	14,284		

○ 관광 분야 기술개발(R&D) 사업

구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160	한국콘텐츠 진흥원	관광기업 혁신 및 관광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25년	1,160		
'26년	3,750		관광데이터 관리기술 개발, AI 에이 전트 기반 관광서비스 기술 개발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산업 육성 방식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안, 2220737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안, 2220513호)
관련 규정	-관광산업의 육성 시책 마련 의무(제18조) -관광 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 마련 의무(제19조)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시행 의무(제20조)	-관광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무(제10조)

문 의 처

02)6788-5377